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의 안 번호	256
-----------	-----

2022년 12월 19일
교 통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이병운 의원 외 27명

나. 제안일자 : 2022년 09월 19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○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(2022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병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·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“자율

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”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위원회 구성이 공공기관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

- 또한,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의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음
- 따라서,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 정책 등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,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는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할 필요가 있음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관련협회 전문가 등에 대한 위촉근거를 마련함 (안 제5조제2항제1호)
-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함 (안 제16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2. 10. 27. ~ 2022. 10. 31.
-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- 제출의견 : 원안 동의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 및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내 자율주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

1) 교통정책과-36060호(2022.12.15.) “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에 대한 의견 제출”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“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²⁾ 시범운행지구 운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관련 협회 등의 전문가로 확대 규정하는 한편 자율주행시설 관리자가 시설 운영·관리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토록 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이하 “시범운행지구”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지정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■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확대 관련(안 제5조제2항제1호)

- 안 제5조제2항제1호는 ‘위원회’의 위촉직 위원의 자격³⁾을 공공기관⁴⁾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에 소속된 관련 전문가로 한정하

2)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율주행자동차”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.

3) 「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」 제5조(위원회의 구성)①,②생략

1. 위촉직 위원: 공공기관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

4)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(공공기관의 구분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.

1. 공기업·준정부기관: 직원 정원,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

고 있는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와 관련 협회의 전문가도 포함시키도록 확대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- 위원회는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운송사업 관련 재정지원 및 요금정책, 안전운행 관련규정, 관련시설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자문하고 심의해야 한다는 점에서

서울시 정책과 예산을 심의·편성하는 서울시의회와 자율주행 관련 협회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자격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또한, 서울시는 동 조례 제정('21.7.20.) 이후 위원회와 안전분과 위원회를 구성⁵⁾('21.10.1.)하여 현재까지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미 위원에 서울시의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와 협회의 전문가를 위원자격으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

기관

2. 기타공공기관: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

5)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개요

- 근거 :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등
- 구성 : 위원장 포함 총 15인 이내(임명직 12명, 당연직 2명)
 - (위원장) 이청원 서울대 교수, (부위원장) 교통기획관
 - (분과위원회) 자율車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검증 안전분과위원회
 - 위촉직 의원 : 대학교, 연구원, 민간단체, 시의회, 재단법인 소속자
- 임 기 : 2년('21.10.1~'23.9.30, 한차례 연임 가능)
- 개최횟수 : 총 12회 (위원회 7회, 안전분과위원회 5회)

■ 자율주행시설 유지·관리계획 매년 수립 관련(안 제16조제4항)

- 안 제16조제4항은 자율주행시설 관리자가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‘매년’마다 수립·시행토록 명시하는 것임
- 동 조례 제16조에서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원활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지원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주행 협력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 운전자에게 시범운행지구임을 안내하는 안내포지판,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지 등 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토록 하고 있음
- 그러나, 자율주행시설 관리자가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강제하고 있을 뿐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칫 시설운영 및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
- 따라서,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 및 시범운행지구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, 공공기관”으로, “민간단체 중”을 “민간단체, 협회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수립·시행”을 “매년 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위촉직 위원: <u>공공기관</u>, 연구원, 학교, 기업, <u>민간단체</u>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~ ⑥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----- <u>서울특별시의회</u>, <u>공공기관</u>----- ----- <u>민간단체, 협회 등</u>----- ----- ----- 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자율주행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6조(자율주행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<u>매년 수립</u> <u>·시행</u>-----.</p>